

재산세(건축물) 감면

□ 사업개요

- 임대료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, 중국연관 수출업체의 재산세 감면

□ 지원대상 및 요건

- 과세기준일(6.1.)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총 30%이상 인하 및 임대·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
-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 중 전년동기(1/4분기) 대비 매출액(부가가치세신고자료)이 20% 이상 감소한 업체

□ 지원혜택

- 2020년 재산세(건축물) 감면
 - 착한 임대인 :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비율 적용(한도 50% 이내)
 - 중국 수출기업 등 :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재산세 25%~75%감면

□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2020. 6. 1. ~ 6. 15.
- 신청장소 :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제출서류
 - 착한임대인 : 임대차계약서, 입금계좌 사본(임차인→임대인)
(임대인 건축물대장,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확인)
 - 중국수출기업 등 : 전년동기(1/4분기) 부가가치세 신고자료, 수출·입
관련자료(국가별(중국) 수출입실적 증명서)

※ 문의 : 재무과 부과담당 (☎061-390-7386)